

해외 경쟁정책 동향

• 본 연합회 •

미국

연방법무부, 지역 금융사간의 기업결합에 조건부 승인

연방법무부는 Regions Financial Corporation과 AmSouth Bancorporation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앨라바마, 미시시피 및 테네시 지역에 있는 AmSouth Bancorporation의 52개 지점들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키로 했다. 이는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의 경쟁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연방법무부는 만일 이러한 매각 조치 없이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 개 주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 사업을 하는 시장에서 경쟁상의 문제가 생겨 중소기업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Regions Financial과 AmSouth Bancorporation이 합치는 결합기업은 앨라바마와 미시시피에서는 제1위 사업자가 되고, 테네시에서는 제2위 사업자로 부상하며, 미국

전체적으로는 제15위 사업자가 된다. 연방법무부와 당사회사들간에 합의한 바에 따르면, 당사회사들은 앨라바마 주에 있는 20억 달러 규모의 39개 지점과 미시시피 지역의 304백만 달러 규모의 6개 지점, 그리고 408.2백만 달러 규모의 테네시 지역 7개 지점을 처분하기로 했다. 이 처분에는 소비자 및 상업용 융자 부문도 포함돼서 매각된다. Regions Financial과 AmSouth Bancorporation은 또한 자신들의 사업장이 중복되는 지역들(앨라바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및 테네시)에서 지점 설비를, 은행 전문거래업자(non-bank buyer)가 아닌 자가 제안한 금액이 은행 전문거래업자(bank-buyer)가 제안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은행 전문거래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하기로 했다. 예금이나 대출 업무가 아닌 물리적 지점 시설만으로도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한 시설이 완비되었다는 점과 시장 진입이라는 면에서 가치있는 자산이라는 것이 연방법무부의 입장이다.

“이번 매각조치는 앨라바마, 미시시피 및 테네시에 있는 소비자들과 사업자들이 소규모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Thomas O. Barnett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은 이제 마지막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승인만을 남겨 놓고 있다.

Regions Financial Corporation은 앨라바마주 버밍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846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총 605억 달러의 수신고를 올리고 있다. 이 회사는 중남부 지역 16개 주에서 약 1,300개의 지점과 약 1,600개의 ATM을 가지고 있다.

한편 AmSouth Bancorporation은 앨라바마주 버밍햄에 본사가 있으며, 528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367억 달러의 수신고를 유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미국 남동부 지역 691개의 지점과 1,200개의 ATM을 가지고 있다.

2006. 10. 19. 연방법무부

DRAM 사업자, 가격고정 및 입찰담합 혐의로 기소

샌프란시스코 연방대陪심은 삼성전자 경영진 2명과 하이닉스 아메리카 경영진 1명에 대해 국제적 DRAM 가격담합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고 연방법무부가 발표했다. 연방법무부의 DRAM 시장에서 대한 지속적인 조사로 이번 기소를 포함해서, 4개 회사와 16명의 개인이 기소되어 총 731백만 달러가 넘는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 금액은 특정 산업에 대한 독점금지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액수이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이번 사건에서는 김모씨, 나모씨 및 Swanson 등 지난 2001년 4월 1일부터 2002년 6월 15일까지 지속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기소되었다. “독점금지국은 형사 카르텔에 참가한 개인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고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그는 또한 “카르텔에 대한 형사 집행은 우리 국의 최우선 과제이며 기업과 개인 모두 독점금지법을 준수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DRAM은 가장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반도체 메모리 제품으로서, 컴퓨터, 서버, 프린터, PDA, 모뎀, 휴대폰, 라우터, 디지털 카메라 등 여러 전자제품에 이용되고 있다. 지난 2004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만 약 77 억 달러의 DRAM이 판매되었다.

2006. 10. 18. 연방법무부

연방법무부, “AT&T와 BELLSOUTH의 기업결합 문제없어”

Thomas O. Barnett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장은 BELLSOUTH에 대한 AT&T의 주식 취득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관련 조사를 종결지었다고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AT&T에 의한 BELLSOUTH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하여 심층 조사를 한 결과, 독점금지국은 신고된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독점금지국은 두 회사가 현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내·외 전화, 기업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통신서비스 및 인터넷 서비스 뿐만 아니라, 향후 무선 광대역 서비스와의 경쟁 상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

또한 그는 “시내·외 전화 서비스 시장에 있어서 다른 경쟁자들의 진입, 규제 환경의 변화 및 시장내 신기술의 출현은, 이 기업결합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번 신고된 기업결합은 인터넷 서비스 시장이나 ‘네트워크 중립성’과 관련하여 경쟁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 결합기업은 기업고객을 상대로 하는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다른 설비에 기반한 경쟁사들과의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기업결합은 어느 지역에서도 주파수 소유와 관련하여 집중 현상을 발

생시키지 않을 것이고, 무선 광대역 서비스에 있어서 AT&T가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주파수를 통제하지 못할 것으로, 결국 이번 기업결합은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이익과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2006. 10. 11. 연방법무부

Stolt-Nielsen S.A.와 그 자회사 2개사 및 임원 2명, 국제 수화물 유조선(Parcel Tanker) 수송에 서의 카르텔 사건에 관하여 기소

필라델피아 연방대陪심은 금일 런던에 거점을 둔 Stolt-Nielsen S.A., 그 자회사 2개 및 임원 2명에 대해 미국과 다른 지역간에 수화물유조선 (Parcel Tanker) 수송의 수량수송계약에 있어서 고객할당, 가격카르텔, 입찰담합을 공모할 것에 관여했다 하여 기소했다고 법무부는 발표하였다. 금일의 기소를 포함하여 5개사 및 5명이 기소되었으며, 법무부의 진행중인 수화물유조선 수송산업에 관한 독점금지 심사에 기인하는 벌금액은 총 6,230만 달러 이상이 되었다.

Stolt-Nielsen S.A.와 그 자회사 - Stolt-Nielsen Transportation Group Ltd. of Liberia 및 Stolt - Nielsen Transportation Group Ltd. of Bermuda(이하 합쳐서 SNTG라 한다) - 및 미국 시민인 Samuel A. Cooperman과 뉴질랜드 시민인 Rechard B. Wingfield

는 수화물유조선에 관하여 공모를 함으로써 금일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 기소되었다. Cooperman은 SNTG의 전(前)회장, 사장겸 최고경영책임자이다. Wingfield는 SNTG의 전부 사장이며 유조선 무역담당 임원이다. 양 자회사와도 코네티컷 주 그리니치에 사무소를 두었다.

「기소장에는 Stolt-Nielsen 및 그 임원에 의한 중대한 독점금지 범죄, 즉 가격카르텔, 고객할당 및 입찰담합이 주장되었다.」고 법무부 독점금지 국장 Thomas O. Barnett는 언급하였다. 「국제카르텔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은 독점금지국의 최우선 사항이며, 이와 같은 위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것에 이후에도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수화물유조선 수송은 방수격실이 설치된 원양항로선에 의한 bulk 화학 물질, 식용유, 그 밖의 특수한 액체의 수송이다. 수량수송계약은 항구에서 항구까지 bulk 액체 수송에 관한 고객과 수화물유조선 수송회사 간의 계약이다.

주장된 공모행위는 적어도 1998년 8월 이전부터 시작되어 늦어도 2002년 11월 말까지 계속되었다. 기소장에 의하면 Stolt-Nielsen 그룹과 경쟁업자 2개사의 대표자는 회합하고, 수량수송계약에서 서로의 고객을 둘러싼 경쟁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고 되어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그 밀약을 실행함으로써 기소되었다.

- 서로의 고객으로부터 일을 구하는 것을 삼가고, 또한 고객으로부터 입찰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입찰을 사퇴하거나 또는 고의로 높은 가격으로 부정한 입찰가격을 제시하고,
- 경쟁을 피하기 위해 수량수송계약에 있어서 고객과 가격에 대해 협의하고,
- 본 합의를 쉽게 실현시키기 위해 고객 리스트를 작성, 간신, 교환하고,
- Stolt-Nielsen의 당시 법무고문에 의해 공모행위의 확증이 발견된 후에도 회합, 협의 및 공모행위가 연이어 유효하다고 경쟁업자에게 보증함으로써 공모행위를 계속해서 하였다.

2004년 3월 독점금지국은 법인에 대한 leniency program에 기인하여 과거 Stolt-Nielsen에 부여한 조건부 leniency를 철회하였다. Stolt-Nielsen의 조건부 leniency는 당해 회사가 “위법한 활동을 명백히 한 이상 반경쟁적 활동에 대한 그 역할을 그만두기 위해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강구한다”는 약속을 포함한 당해 회사에 의한 다수의 제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었다. 독점금지국은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임원인 Wingfield를 포함한 Stolt-Nielsen의 당시 법무고문에 의해 책략이 발견된 후에도 수개월간 경쟁업자와 모

여 공모행위에 계속해서 관여한 것, 더욱이 Stolt가 실제 공모행위의 정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위적이고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 조건부 leniency를 철회하였다.

2004년 2월 Stolt-Nielsen S.A., Stolt-Nielsen Transportation Group Ltd. of Bermuda 및 Wingfield는 독점금지국에 의한 기소 금지를 구하여 제소하였다. 펜실베니아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2005년 1월 당해 금지를 인정하였다. 2006년 3월 제3순회연방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2006년 6월에는 재심리 주장을 각하였다. SNTG와 Wingfield에 의한 제3순회연방고등법원의 명령을 취소하고, 정지시키도록 한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그리하여 2006년 8월 24일 지방법원은 독점금지국에 대한 금지를 취소하였다.

「Stolt-Nielsen은 1993년에 현재의 프로그램이 공표된 이래 조건부 leniency를 철회한 최초의 기업이 된다.」고 Barnett는 언급하였다. 「법인에 대한 leniency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떤 기업을 제외시키는 것은 독점금지국이 쉽게 다룰 일은 아니지만, 유감스럽게도 동 사건에서는 완전하고도 진실한 협력을 제공할 것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정합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각각의 피고인은 셔먼법 위반이 되는 경쟁을 억압하는 공모에 관여함으로써 기소되었다. 2004년 6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셔먼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된 형사벌의 상한은 3년 금고형 및 개인에 대해 35만 달러, 법인에 대해 1,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벌금의 상한액은 범죄에 의해 얻은 이익 금액의 2배액 또는 범죄에 의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의 2배액 둘 중에서 셔먼법상의 상한금액보다도 높은 금액인 경우에는 인상될 수 있다.

금일의 소추는 연방조사국(FBI) 필라델피아 사무소와 제휴하여 필라델피아 지방사무소에 의해 행해진 법무부의 진행중인 수화물유조선 수송산업에 관한 심사의 결과이다.

2003년 가을 수송회사인 Odfjell Seachem AS는 수화물유조선 산업에서 고객할당, 입찰담합 및 가격카르텔을 공모하는 것에 관여함으로써 유죄답변을 행하고, 4,250만 달러의 벌금 지불 판결을 선고받았다. Odfjell의 임원 2명, Bjorn Sjaastad와 Erik Nilsen은 또한 동일 공모행위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 유죄답변을 하였다. Sjaastad는 4개월의 금고 및 25만 달러의 벌금 지불, 그리고 Nilsen은 3개월의 금고 및 2만 5,000달러의 벌금 지불 판결을 각각 선고받았다.

2004년초 2번째 회사인 Jo-Tankers B.V.도 또한 수화물유조선

수송산업에서의 수량수송계약에 공모하여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유죄답변을 하였다. JoTanker는 1,950만 달러의 벌금 지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전(前) 공동상무이사인 Hendrikus van Westenbrugge는 유죄답변을 행하고 7만 5,000달러의 벌금과 3개월의 금고형 판결을 선고받았다.

일본 『공정취인』 2006년 10월호에서 발췌
2006. 9. 6. 법무부 독점금지국 발표문

연방거래위원회, Rambus가 위법하게 독점력을 획득했다고 판단

기만적 행위가 컴퓨터 메모리 산업의 “저해”를 조장하였다.

만장일치에 의해 연방거래위원회는 컴퓨터 테크놀로지 개발 회사의 Rambus가 다이나믹 랜덤 액서스 메모리, 소위 DRAM chips의 업계 표준에 채택된 4개 컴퓨터 메모리 기술시장을 위법하게 독점했다고 판단하였다.

DRAM은 PC와 서버, 프린터, 카메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Pamela Jones Harbour 위원의 의견에서는 일련의 기만적 행위를 통해서 Rambus는 중요한 표준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컴퓨터 메모리 산업의 반경쟁적 저해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위원회는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Rambus의 기만적 행위는

셔먼법 제2조의 배타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4개의 관련시장에서 Rambus가 독점력을 획득하는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Rambus의 일련의 기만적 행위가 가져온 실질적 경쟁저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보고를 명했다.

2002년 6월, FTC는 Rambus가 고의로 반경쟁적 행위를 하여 업계 전체의 표준을 결정하는 단체를 기만하고 경쟁 및 소비자에 대해 실질적인 손해를 가져왔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반경쟁법에 위반했다고 하여 동사를 제소하였다. FTC의 주장에서는 Rambus가 “특허화 된 기술이 공표된 표준에 편입하는 것을 가능한 피하고, 또한 만약 편입된 경우에는 무료 또는 합리적이고도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그 기술의 라이센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최소한 보증하는 것을 책무로 하고 있는” 업계의 표준책 정기관인 전자소자기술연합평의회(the 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JEDEC)에 참가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ambus는 적극적으로 개발에 열중한 JEDEC에 숨긴채 4년 이상 JEDEC에 대한 DRAM의 표준결정 작업에 참가하고, 최종적으로 표준으로 채용된 특정의 기술을 포함하는 특허권 및 몇 개의 출원중인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주장은 행정법 판사(ALJ)에 대

한 심판절차에 제소되었다. 2004년 2월, Stephen J. McGuire 수석판사는 「원고측 대리인은 주장된 위반의 법적 책임을 증명할 의무를 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판결하고, 처음 결정에 대한 주장을 각하하였다. FTC 직원인 원고측 대리인은 위원회에 대해 동 결정에 대해 상소하고, 위원회는 금일 ALJ의 결정을 뒤엎는 판단을 내렸다.

위원회가 만장일치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Rambus의 일련의 행위는 FTC법 제5조에서의 기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Rambus의 행위는 Rambus가 JEDEC의 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사용되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취득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신뢰감을 품게 함으로써 JEDEC를 속이는 것이 계산된 것이었다. … 이 상황하에서 JEDEC는 Rambus의 작위와 부작위를 신뢰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SDRAM과 DDR SDRAM의 표준을 채용하였다.」

「Rambus는 JEDEC 내부에서의 표준결정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의견은 이어진다. 「JEDEC는 어떤 기술을 채택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에 판단이 가능하도록 특허권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요구해 왔고, JEDEC 멤버는 잠재적인 특허의 영향에 대한 조기 인식이 특허 침해를 피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Rambus는 전개되고 있는 특허권의 상태에 대한 인식이 JEDEC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공개하는 것을 회피하였다.」

「그 유효한 전략을 통해서 Rambus는 표준이 채택되어 시장이 고정된 후까지 특허권 및 출원중의 특허를 비밀로 할 수 있었다」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Rambus는 표준을 사용한 JEDEC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을 때 처음으로 그 특허권을 분명히 하였다.」

Rambus의 행위를 서면법 제2조의 기준에 비추어 분석하면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Rambus는 4개의 관련시장에서 독점력을 획득할 중대한 원인이 되는 배타적 행위를 하였다. Rambus의 행위는 자기가 소유하는 특허권이 선택됨으로써 특허권 사용료의 의무를 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잠재성을 은폐하고, SDRAM과 DDR SDRAM의 표준을 포함하는 특허권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JEDEC를 묵묵히 이용함으로써 JEDEC가 JEDEC DRAM 표준에 Rambus의 기술을 채택하여 장래의 특허권 사용료율에 대해서 JEDEC가 보증을 확실히 할 수 없었던 커다란 원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Rambus가 독점력을 획득하는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Rambus는 JEDEC의 DRAM 표준에 있어서 Rambus의 기술이

포함되는 것은 그 특허화된 기술의 우위성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의견을 진술한다. 「이러한 주장은 기록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2개의 JEDEC의 표준이 채택되고, 실질적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증가한 후에도 JEDEC는 동 표준에 속박되지 않았다는 Rambus의 주장을 지지하는 기록도 없다. Rambus는 자사의 행위와 JEDEC가 SDRAM과 DDR SDRAM의 표준을 채택한 것에 대한 관련성은 JEDEC의 표준결정과정과 Rambus의 독점력 획득 간의 관련성과 마찬가지로 보고도 못 본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문제로서나 법적 문제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지 않으면 Rambus가 배타적 행위에 의해 획득한 독점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Rambus의 일련의 기만적 행위가 준 실질적 경쟁 저해가 가져온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적절한 조치를 최상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고 진술한다. 「지금 위원회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발견하여 결정했기 때문에 추가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별히 구두변론을 시정조치 문제에 전념한 후 위원회는 가장 확실하게 광범위한 시정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별도의 보충의견에서는 Jon Lei-

bowitz 위원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JEDEC의 표준결정 과정을 Rambus가 악용한 것은 고의적이고 부적절하며 경쟁과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유해하였다」. 그는 Rambus의 행위는 반독점법에 저촉할뿐만 아니라 FTC법에 의해 광범위한 범위에 위반하여 불공정한 경쟁방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의견 및 명령을 발하기 위한 위원회의 투표 결과, 찬성5, 반대0이었다.

일본『공정취인』2006년 9월호에서 발췌
2006. 8. 2. 연방거래위원회 발표문

E U

EU위원회, Siemens의 Bayer Diagnostics 인수 승인

EU위원회는 EU 기업결합규칙에 따라서 독일 Bayer Healthcare의 진단사업 부문을 Siemens사가 인수하려는 계획을 승인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유럽 역내 또는 그 일부 지역에서 경쟁상의 문제를 심각하게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Siemens는 의료시스템을 포함하여 제조, 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Siemens는 지난 2006년 7월 28일에 Diagnostic Products Corporation(이하 "DPC")

을 인수한 후, 시험관진단(in-vitro diagnostic; 이하 IVD)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Siemens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의 연구실에 대해 IVD 시스템의 개발, 생산 및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IVD 시스템은 예민한 부품들로 만들 어져 있으며, 환자로부터 추출한 세포나 혈액 등의 샘플을 이용하여 진단을 하는 장비이다.

이 두 기업들은 모두 IVD에 속하는 면역화학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은 유럽이나 세계 면역화학 시장에서 최대 규모의 사업자를 탄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장조사 결과, 소비자들이나 의료기관 등의 수요자들이 인상된 가격을 지불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

만일 Siemens와 Bayer Diagnostics가 가격을 인상할 경우, 소비자들과 경쟁자들이 그 대신에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시장에서 강력한 시장력과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음이 조사됐다. 또한 Siemens와 Bayer Diagnostics는 현재 면역화학 분야에서 조금은 다른 시장 포지셔닝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 10. 31. EU위원회

EU위원회, Hewlett Packard와 Mercury의 기업결합 승인

EU위원회는 미국의 Hewlett Packard Company가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인 Mercury Interactive Corporation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했다. 이번 기업결합이 유럽 역내 또는 그 일부 지역에서 경쟁상의 문제를 심각하게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Hewlett Packard는 소비자와 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세계적인 기술 솔루션 제공자로서, IT인프라, PC 및 접속 설비 등을 생산하고 있다. Mercury는 IT 정부와 매니지먼트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회사이다.

이 두 회사들의 활동 중에서는 오로지 일부 단계에서만 중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Hewlett Packard는 현재 기존 경쟁자들과 효과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사업자들이 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위원회는 또한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Hewlett Packard와 Mercury의 상품이 결합하거나 타사의 소프트웨어 사용자에 대한 접속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시장에 강력한 경쟁사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Hewlett

Packard와 Mercury가 그러한 전략을 이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06. 10. 20. EU위원회

TV, 셋톱박스, 스마트카드 및 기타 단말장치에서 신호를 부호화하고 이를 디코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

2006. 10. 17. EU위원회

EU위원회, 방송서비스 독점으로 스웨덴을 EU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

EU위원회는 스웨덴을 EU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국영방송사인 Boxer TV-Accesss AB가 스웨덴 디지털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에서 access control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행태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기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 경쟁 치침에 따르면, 스웨덴은 방송전송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독점권을 2003년 7월까지 폐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는 아직까지도 Boxer TV-Accesss AB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EU법원 제소는 EU조약상 위법행위에 대한 최후의 수단이다.

EU경쟁위원회 Neelie Kroes는 “스웨덴을 법원에 제소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스웨덴 시청자들이 공동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들의 권한인 디지털 지상파 방송 공급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당하고 있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access control 서비스에는

가장 효과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경쟁 당국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덧붙였다.

2006. 10. 25. 연방카르텔청

독일

연방카르텔청, 메트로와 월마트의 기업결합 승인

연방카르텔청은 월마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이른바 self-service consumer market 부문을 메트로 사가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 원래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EU위원회에서 해야 하지만, 독일 내의 시장에서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당사회사들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을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이관했다.

이에 연방카르텔청은 52개의 지역 소매 식료품 마켓을 조사했고,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이 기업결합을 승인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형성되거나 강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연방카르텔청장은 “이번 사건은 회원국 경쟁당국과 EU위원회간의 협조가 이루어낸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현행 규정상 기업결합 계획은, 형식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따르면 다른 경쟁당국이 심사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연방카르텔청, conglomerate merger에 관한 컨퍼런스 개최

지난 9월 21일 연방카르텔청 경쟁 법 위킹그룹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conglomerate mergers under merger control”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에는 경제학 및 법학을 전공한 대학교수들과 연방대법원 카르텔 전담 판사들 및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판사들이 참가했다.

이른바 conglomerate merger는 결합회사들간에 수평적인 사업 중복이나 수직적인 연결을 유발시키지 않으며, 이들 기업의 제품들이 서로 보완 또는 대체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기업결합은 반경쟁적인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연방카르텔청은 이번 토론을 기초로 하여 “Conglomerate Mergers in Merger Control”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한다.

2006. 9. 22. 연방카르텔청

일 본

주식회사 아이비에 대해 배제 명령

공정취인위원회는 주식회사 아이비가 판매하고 있는 중고 이륜자동차와 관련된 표시에 대하여, 경품표시법 제4조제1항제1호(우량 오인)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배제명령을 했다.

주식회사 아이비는 2006년 7월 20일 키타오사카 오토라고 칭하는 전시장에 전시한 중고 이륜자동차 17대와 아톰이라고 칭하는 전시장에 전시한 중고 이륜자동차 15대의 합계 32대에 대해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각각 매입시의 옥션 출품표에 기재된 주행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계를 되감거나 또는 주행거리계를 주행거리수의 것보다 적은 것으로 교환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에 대해 공정취인위원회는 이러한 표시는 일반소비자에 대해 실제로 현저히 우량하게 나타났었다는 취지를 공시하고 향후 이 같은 표시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2006. 10. 18. 공정취인위원회

공취위, 대규모소매업자에 대해 배제명령

공정취인위원회는 주식회사 밸로(이하 “밸로”)에 대해 독점금지법 규정에 근거해 심사를 하여 동 법 제19조(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납입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의 특정의 불공정한 거래방법 제6항, 제7항 및 제8항 및 불공정한 거래방법 제14항((우월적 지위의 남용)제1호에 해당)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배제조치 명령을 했다.

대규모소매업자란 일반소비자에 의해 일상 사용되는 상품의 소매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하며, 전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매상고가 100억 엔 이상이거나 또는 점포 면적(소매업을 행하기 위한 점포용으로 제공되는 바닥 면적)이 특별구 및 정령 지정 도시의 구역에 있어서는 3,000 평방미터 이상, 그 이외의 구역에 있어서는 1,500 평방미터 이상의 점포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밸로는 식료품 슈퍼(취급 품목 : 식료품 등) 및 홈 센터(취급 품목 : 주거 관련품, 일용 잡화품 등)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식료품 슈퍼 납입업자에 대해 연말선물 상품 등의 판매에 있어서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기프트 상품이나 자사의 상품권 등을 구입시키고 있었다.

또한 밸로는 자사 점포의 신규 오픈 및 개장 오픈에 있어서, 자사의 업무

를 위한 상품의 진열, 보충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식료품 슈퍼 납입업자 및 홈 센터 납입업자들이 파견한 종업원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타사가 영업하고 있던 홈 센터 점포의 영업 등을 양도 받아 해당 점포를 자사의 홈 센터의 점포로서 신규 오픈하면서, 자사의 재고가 되는 상품을 처분하기 위해,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홈 센터 납입업자에 대해 해당 상품을 구입시키고 있었다.

「식료품 슈퍼 납입업자」란 밸로가 식료품 슈퍼의 점포에 있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동 사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납입업자이며, 거래상의 지위가 밸로에 대해서 뒤떨어지는 사업자이다. 「홈 센터 납입업자」란 밸로가 홈 센터의 점포에 있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동 사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납입업자이며, 거래상의 지위가 밸로에 대해서 뒤떨어지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에 대해 공정취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배제조치를 했다. 첫째, 위와 같은 행위를 취소하고 그 취지의 확인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둘째,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식료품 슈퍼 납입업자 및 홈 센터 납입업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자사 종업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셋째, 납입업자와의 거래에서 독점금지법의 준수에 관한 행동지침을 작성하여, 식료품 슈퍼 납입업자 및 홈 센

터 납입업자와 거래를 하는 구매 담당자에 대하여 납입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정기적인 연수 및 법무 담당자에 의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006. 10. 18. 공정취인위원회

공취위, 자격시험 등 수험대비 학원에 대해 경고

공정취인위원회는 TAC 주식회사(이하 “TAC”), 학교법인 오오하라 학원(이하 “오오하라 학원”) 및 주식회사 와세다 세미나(이하 “와세다 세미나”)의 3 사업자가 각각 행하고 있던 공인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 또는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시험대비용 강좌의 수강생 모집에 관한 표시에 대하여, 경품표시법 제4조제1항제1호(우량 오인)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고를 했다.

TAC, 오오하라 학원 및 와세다 세미나는 각각 스스로가 개설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 또는 공무원 시험과 관련되는 시험대비용 강좌의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에 배포한 이들 강좌 안내 팜플렛에서 마치 팜플렛에 기재한 합격 실적이 자신들의 강좌를 수강했기 때문인 것처럼 표시를 했다. 그러나 사실은 기재한 합격 실적 안에는 단기간의 강좌를 수강한 것에 지나지 않는 합격자 등 그 학원들이 개설한 시

험대비용 강좌를 수강한 성과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합격자가 포함되어 있어 동 시험대비용 강좌의 내용에 대해서, 실제보다 현저하게 우량하다고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TAC에서 개설한 공인회계사 대비용 강좌와 관련해서는, 「2005년도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TAC 회원 합격자수 1,079명→합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82.4%라고 기재했다. 이는 마치 2006년도의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에서 TAC의 공인회계사 시험대비용 강좌를 수강한 성과로서 해당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079명이며, 해당 시험의 전체 합격자 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82.4%인 것 같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1,079명 안에는 단기간의 답안 연습을 위한 강좌, 단기간의 시험 직전 대책을 위한 강좌를 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 합격자 등 TAC의 공인회계사 시험대비용 강좌를 수강한 성과라고 인정할 수 없는 합격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와세다 세미나에서도 지방공무원 상급시험, 국가 공무원 Ⅱ종 시험 등 공무원 시험대비용 강좌의 팜플렛에서, 「2005년 대졸·최종합격자 1,545명」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마치 2005년도 대학졸업 정도의 공무원 시험에서 와세다 세미나의 공무원 시험대비용 강좌를 수강한 성과로서 해당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545명인

것 같이 표시했다. 그러나 1,545명 안에는 단기간의 면접시험 대비를 위한 강좌, 단기간의 답안 연습을 위한 강좌를 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 합격자 등 와세다 세미나의 공무원 시험 대비용 강좌를 수강한 성과라고는 보기 어려운 합격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1,545명은 동일인이 복수의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는 합격자를 두 번 계산해서 기재하여 여러 시험에 동시 합격한 중복을 제외하면 실제 합격자 수는 이것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 10. 12. 공정취인위원회

사단법인 사이타마현 수의사회에 대해 경고

공정취인위원회는 사단법인 사이타마현 수의사회(이하 “사이타마현 수의사회”)에 대해 그동안 심사를 실시하여, 독점금지법 제8조제1항제4호(사업자단체에 의한 구성사업자의 기능 또는 활동의 부당한 제한의 금지) 및 제5호(사업자단체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고조치했다.

사이타마시에 위치하고 있는 사이타마현 수의사회는 2006년도 이후에 사이타마현 구역 내의 시읍면이 위탁하는 집합 광견병 예방주사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05년 9월 30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사이타마현의 구역내의 시읍면과 독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자는 취지의 결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결의에 따르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사이타마현 수의사회로부터 제명시키자는 취지를 통지함으로써, 구성 회원이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광건병 예방주사로 사용하는 백신의 판매업자 및 재료 판매업자에 대해,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집합 광건병 예방주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회원과는 거래하지 말도록 요청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러한 판매업자가 회원에 대해 해당 백신 및 재료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협의가 인정되었다.

사이타마현 수의사회의 첫 번째 행위는 독점금지법 제8조제1항제4호(사업자단체에 의한 구성사업자의 기능 또는 활동의 부당한 제한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고, 두 번째 행위는 동 조 제5호(사업자단체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규정에 각각 위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취인위원회는 사이타마현 수의사회에 대해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이 사건 이외에도 최근 사업자단체에 의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 사단법인 후쿠야마시 의사회는 의료기관의 개설 및 진료과목

의 증설에 대해, 회원이 히로시마현 지사 등에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기 전에, 소속되어 있는 블록의 대표가 서명날인 한 신고서에 의해 신고를 하도록 하여, 회원간 경합의 우려가 없도록 해당 신고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회원이 신고를 하는 데에 합의하지 않거나 조건부로 합의해 줌으로써 회원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 및 진료과목의 증설을 제한한 협의가 인정되어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2005년 12월 29일).

사단법인 옻카이치 의사회도 회원이 65세 미만의 환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요금을 1건에 대해 3,800엔 이상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회원이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 진료과목의 증설 및 병상의 증상을 제한한 협의로 권고조치를 받았다(2004년 7월 27일).

또한 미에현 사회보험 노무사회도 회원의 메일, 팩시밀리 등에 의한 광고활동 및 회원이 다른 회원의 고객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을 제한하여 권고조치를 받았었다(2004년 7월 12일).

2006. 9. 29. 공정취인위원회